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서

함양군과 현대엔지니어링(주)(이하 ‘각 기관’이라고 한다)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보급을 통한 함양군민의 전기자동차 사용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조 (협약 당사자의 책무)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 함양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관련 행정지원 등
- 현대엔지니어링(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설치장소: 함양군 일원(공공시설 위주)
- 설치대수: 총 68기(급속-100kw/20기, 완속7kw/48기)
※ 충전기 설치대수를 변동하고자 할때에는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치비용: 약 14억원(전액)
※ 충전수익금은 현대엔지니어링(주)에 귀속, 유지관리는 최소10년 ~ 최장20년(친환경자동차법)
- 설치기간: 협약일로부터 ~ 6개월 내

제4조 (협약 사항내용)

- 함양군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주)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임대기간 만료 시 각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현대엔지니어링(주)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운영 및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요금수준으로 한다.
- 현대엔지니어링(주)는 함양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운영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 적극 처리하고, 이용객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충전기 교체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 함양군 공공시설의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 변동 시 당사자 간 사전 협의한다.

제5조 (자료의 제공 등)

각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협약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6조 (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보 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상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 (효력)

- 본 협약서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협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1호에 따른 협약의 효력기간 중 각 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태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각 기관은 이 업무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7일



대표이사 홍현성

代
·

최근한



함양군

군수 진병영

진
병
영